

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

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
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
보건복지부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
노동부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

보고순서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I 2단계 정책 필요성

II 2단계 정책 비전과 추진전략

III 2단계 정책 주요내용

IV 향후 계획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I 2단계 정책 필요성

1. 추진배경

1 1단계 정책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지방발전 전기 마련

1단계 정책은 공공부문 주도의 다핵형 국토발전 및 혁신주도형 지역경제 발전기반 강화에 역점

2단계 정책은 민간부문의 지방투자 촉진으로 지역의 발전동력 확충

●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2 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흡인력 지속



● 수도권 집중도(2000년) : 영국 12.2%, 프랑스 18.7%, 일본 32.6%, 한국 47.2%

1. 추진배경

3

심각한 지역간 발전 격차

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종합적 계량분석(한국지방행정연구원 '07.7월)



* 인구, 산업경제, 재정, 복지 및 인프라 5대 부문의 2005년도 지표를 분석

외국의 정책사례... EU, 영국, 프랑스, 태국 등도 지역분류 및
인센티브 차등화를 통해 균형발전 추진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Ⅱ 2단계 정책 비전과 추진전략

1. 정책비전

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지방

2단계
(민간부문)

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

기업하기 좋은
투자환경 조성

살기 좋은
생활여건 조성

1단계
(공공부문)

다핵형 국토공간 형성

- 행정중심복합도시
- 혁신도시·기업도시
- 공공기관 지방이전

지역경제 기반 강화

- 지역혁신체계(RIS) 구축
- 지역 R&D 역량 강화
- 지역전략산업 육성

2. 추진과제 : 2대부문 14개 과제

정책부문	기업대책	사람대책
정책과제	●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 ● 인력난 해소 ● 산업용지 공급 확대 ● 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●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●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	● 고품질 주택 공급 ● 지방 초·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●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●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●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·문화·의료·복지 인프라 확충 ●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● 지방재정 배분 시 낙후도 반영 확대

3. 추진전략

1

민간기업의 지방투자로 지역발전 동력 확보

1단계 공공부문 중심의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 및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로 지역발전 동력 확충

2

지방투자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

수도권 일극 집중 극복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 유인 제공

3

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병행 지원

기업과 함께 지방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·의료 등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생활여건 제공

4. 추진전략

4

지역분류 제도화와 인센티브 차등 지원

기초단체의 인구·경제력·재정력·복지·인프라 5대부문의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



구 분	지역 I (낙후지역)	지역 II (정체지역)	지역 III (성장지역)	지역 IV (발전지역)
기초단체 수	74개	52개	56개	52개

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간 연구결과('07.7월)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Ⅲ 2단계 정책 주요내용

1. 기업대책 :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1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

지역분류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감면 및 최저한세를 적용 배제

- 중소기업 : 지방기업에 기간 제한없이 차등 감면(30~70%)
- 대기업 : 지방이전 15년, 지방창업 10년간 차등 감면

	현행	2단계안
중소기업	● 창업 : 4년 50% 감면 ● 이전 : 5년 100%, 2년 50% 감면 ● 운영 :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('08년말限) 수도권 10~20%, 지방 5~30%	● 창업·이전·운영·통합 ● 지역별로 차등 감면 지역Ⅰ : 70%, 지역Ⅱ : 50%, 지역Ⅲ : 30%
대기업	● 이전시 최초 5년 100%, 이후 2년 50%	● 이전시 최초 10년: 70%□50%□30% 감면 이후 5년: 35%□25%□15% 감면 ● 창업시 최초 7년: 70%□50%□30% 감면 이후 3년: 35%□25%□15% 감면

1. 기업대책 :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2

인력난 해소

지방기업의 기술 전문인력 확보 지원

- ◎ 지방기업의 전문기술 심화 및 신기술 교육 지원 확대
- ◎ 지방 중소기업 자체 R&D 역량 강화 및 기술 전문인력 공급 확대

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양성 제도 도입

- ◎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맞춘 계약형 학과 등 집중 지원

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

- ◎ 외국인 고용한도 추가 허용 : 현행 기준 + 20%
- ◎ 외국인력 우선 지원 및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확대

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신규 지원

- ◎ 기존 지방기업이 신규투자자로 일정규모의 고용 창출시 지원(2년이내)

1. 기업대책 :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3

산업용지 공급 확대

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 확대

- ⊙ '08년부터 10년 동안 330만m² 규모의 임대산업단지 공급(연간 33만m²)
- ⊙ 혁신도시내 초장기 임대 산업단지 78.5만m² 공급

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

- ⊙ 이전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부지 적기 공급 지원
- ⊙ 국무총리 소속 '이전기업 용지 애로해소위' 를 두어 규제 일괄 처리
- ⊙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인프라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1. 기업대책 :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4

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

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으로 지방에 외자유치 확대

- ◎ '07년 하반기 중 지정요건·기준 등 마련

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수출기업 및 지역경제 육성

- ◎ '08년 상반기 중 2곳 추가 지정

5

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

일정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 이전 시 상업적 도시개발 허용

- ◎ 지방이전 기업 등이 개발하는 기업도시 유형 신설

- ◎ 종업원 규모에 따라 도시개발규모(100만~330만㎡) 차등화

- 시행자의 개별용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및 개발이익 환수비율 인하 방안 검토

1. 기업대책 :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6

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

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 규제 예외 허용

✳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('07.6.22)

7

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

지방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

- ⊙ 지방이전 / 투자에 따른 상담·민원서비스 제공
- ⊙ 관계부처·지자체·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기업별 합동지원팀 구성하여 종합지원

지방이전보조금 지원 확대

- ⊙ 50인 이상→30인 이상 기업
- ⊙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국고보조비율 차등화

2. 사람대책 :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
1

고품질 주택 공급

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 제도 도입

- ◎ 거주기간, 청약예금 가입 등 자격요건 면제·완화
- ◎ 지방 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허용 기간(2년→5년) 연장

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

- ◎ 지방 이전기업이 직원용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

지방 이전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

- ◎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시 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 등) 지원

2. 사람대책 :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
3

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

지방대학 장학금 지원 확대

- ② 이공계 장학금 지방대학생 지원비율 확대(49%→65%)
- ② 인문사회계열 지방대학생 장학제도 신설



지방대학의 학생전용 임대주택 지원

- ② 학생전용 임대주택 건설 지원제도 신설
 - 사립대학에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건설규제 완화

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
- ② 기업의 연구개발설비 및 맞춤형 교육비용 기부금에 세액공제 추가 지원

2. 사람대책 :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
3

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국가출연연-지방대학간 전략적 제휴 지원

- ◎ 지역발전 중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
- ◎ 지방대학 또는 출연연구기관 주관으로 「전략적 제휴」 공모사업 추진
 - 인적교류 제도화, 맞춤형 교육, 연구성과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

지역 특화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

- ◎ 지방대학 특화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「사업단」 지원
 - 국가,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 협동연구 역량 강화
- ◎ 지원분야
 - 국가·지자체 수요(70%) : 10대 성장동력사업, 21개 서비스분야, 지역전략산업
 - 대학 자체 수요(30%) : 지역특화, 균형발전 등 인문사회분야 등

2. 사람대책 :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
4

선진형 의료 서비스 공급

체계적인 지역 의료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

- ◎ 지방국립대 병원 : 3차 전문·특화의료기관
 - 지방국립대 병원의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질환 관리 및 진료
 - 암, 심·뇌혈관계 질환 등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
- ◎ 지방의료원 : 2차 지역거점 의료기관
 - 지역 재활센터·응급의료센터, 만성질환 관리·예방, 출산양육 등 중점 지원
- ◎ 지역보건소 : 1차 지역 의료건강센터로 발전·강화
 - 건강증진, 질병예방관리, 재활보건, 방문보건 등 중점 지원

주민 밀착형 건강관리체계 구축

- ◎ 주민건강정보 DB 구축, 방문검진, 응급의료 지원 등

2. 사람대책 :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
4

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
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

◎ 권역별 응급질환 전문진료 체계 구축

- 전국을 50개 중 진료권으로 나누어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·기능 강화
-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6개 중 진료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신설

◎ 응급환자가 30분 이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지원체계 구축

- 13개 지방 시도 특성화 응급센터 지정·운용(72개소)
- 중환자용 구급차(Mobile ICU) 226대 배치

건강보험료 부담 경감

- ◎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건강보험료 기업 부담분 대폭 감면



2. 사람대책 :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
5

지역 선도도시의 교육·문화·의료·복지 인프라 확충

지역 선도도시 우수학교 설립

- ◎ 혁신·기업도시 내 개방형 자율학교(15개교) 우선 지정
- ◎ 혁신도시 등 지역거점의 국립공고를 특성화 전문계고(25개교)로 육성

문화·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

- ◎ 문화·예술 등 국립시설을 혁신·기업도시에 집중 배치 유도
- ◎ 문화·예술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하여 개발계획 승인

보육·노인복지·의료시설 집중 지원

- ◎ 노인요양시설 우선 설치
- ◎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강화 지원



2. 사람대책 :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
6

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

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

- ◎ 사회개발분야 비중을 40% 수준으로 확대

✱ 07년 사회개발 지출비중 : 36.2%



7

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배분기준 개선

- ◎ '08년 낙후도 요소 반영비중 확대(60%→70%)
- ◎ 재정력 지수, 노령화 등 낙후도 요소 반영을 확대되도록 배분기준 개선

매칭펀드 사업의 지방분담 비율 차등화

- ◎ 차등화 대상사업 및 차등 폭 대폭 확대
- ◎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

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IV 향후 계획

IV. 향후 계획

2007. 07

● 2단계 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 발표

2007. 08

● '08년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

2007. 09

● 법안 국회 제출



The background features a stylized globe with a grid of latitude and longitude lines. Overlaid on the globe are several abstract, flowing lines in shades of blue and green,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global connectivity.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dominated by these cool tones, with a bright yellow-green glow emanating from behind the globe.

국가균형발전으로 함께가는 희망한국

감사합니다